S.R.D EL

출컵계 배우고 미래를 함께 여는 행복한 학교

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



(우55334)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4로 9 / 교무실:(063)262-2226 / 행정실:(063)261-1470 / 팩스:(063)908-5200

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나눔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.

1. 봉사활동의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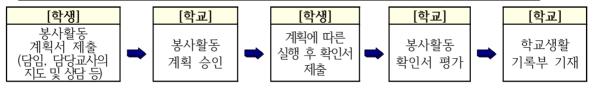
- 가.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.
- 나.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, 호혜 정신을 기른다.
- 다.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,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.

2. 학생 봉사활동 운영

○ 봉사활동은 <u>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</u>과 <u>학생 개인 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</u>의 구체 적인 실적을 인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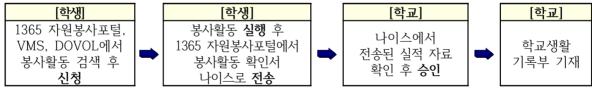
3.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

- 가.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(1365 자원봉사포털(나눔포털), VMS, DOVOL)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
-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(허가)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



나.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(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를 이용하는 경우

○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**실시 전 담당(담임) 교사와 사전 상담을**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



다.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

○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(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, 비종파성)에 부합하는 기관

공공 부문	행정 기관, 공공 기관, 공공 시설
민간 부문	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

- <u>인정 불가 기관</u>: 영리를 <u>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</u>,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
- <u>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, 영역,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</u> 면 인정 불가

라.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

-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(당일 수업시수 + 봉사시간 = 8시간 이내) (7교시인 경우 1시간, 6교시인 경우 2시간, 4교시인 경우 4시간, 휴업일(토요일·공휴일·방학·재량휴업일) 인 정 가능 시간 : 8시간)
-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
-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, 징계,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, 사

회봉사,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

-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
- 봉사활동 실적은 **시간 단위로 계산하며**, <u>분 단위는 절사</u>(단,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)
- <u>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(내빈이나 주차), 주변 정리,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, 단순 참여는 인</u> 정 안 함.
- 학생의 **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(재료 구입 후 제작** 기부 활동, **연회비, 활동비** 등을 내야 하는 활동) **인정 불가**
- 물품 및 현금 기부,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.
-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,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.
-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**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**,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**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**합니다.
- 영리기관[어린이집, 요양원, 병원 등]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

어린이집	사회복지법인 및 국·공립 기관 인정
유치원	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·공립 유치원, 사립 유치원
노인요양병원	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인정 가능. 개인병원은 인정 불
그 신표 6 6 년	가
노인요양원·노인	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.
주야간 보호센터 등	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
	개인 병원은 인정되지 않음.
병원	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
	운영 중인 사업장 (병원 내 사회복지사, 사회공헌팀, 사회사업실(팀) 등이 관리하는 병원)

○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「학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」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.

3. 봉사활동 시 유의 사항

- 가.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「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.
- 나. 자원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(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, 비종파성)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
- 다.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,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(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,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)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
- 라.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(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「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.
- 마. 자녀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(1365 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의 **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**.
- 바.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「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3일

삼 례 동 초 등 학 교 장